

2026년 진주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과 진주시는 신혼부부·출산가구에 주택구입에 사용한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 하며 이에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진주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진주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
구 ※ '2. 자격요건' 참조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의 이자 3% 지원

신청구분	지원내용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19.1.1.이후 혼인) (지 원 금)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 연최대150만원 (지원기간) 최대 5년 간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24.1.1.이후 자녀출산) ※ 입양아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인 가구 포함 (지 원 금)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 연최대150+(30×자녀수)만원 (지원기간) 최대 5년 간+추가 자녀출산 시 5년씩 연장

※ 최대지원기간 : 매년 신청 후 선정 시, 최대 5년 간 지원 가능

(출산가구는 추가 출산 자녀당 5년씩 연장)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2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지원구분에 따라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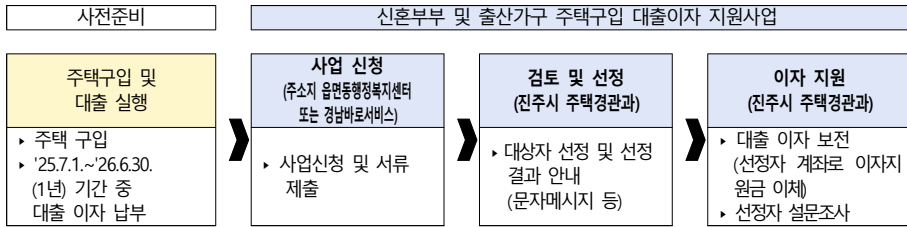
요건	신혼부부	출산가구																		
가. 지원 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1.1.이후 혼인가구 (혼인기간 7년) ※ 사업년도(2026)-7년=2019 ※ 재혼포함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진주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 가구(세대구성원 합산)	① 주민등록 상 2024.1.1.이후 자녀 출산가구(2년 이내 영아 양육) ※ 사업년도(2026)-2년=2024 ※ 입양 포함																		
나. 소득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상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2025년 세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상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5년 세전 기준, 부부 소득 합산) <table border="1"> <tr> <th>가구원수 (부부+출생자녀)</th><th>기준중위소득180% 월소득 (원)</th><th>연소득 (원)</th></tr> <tr> <td>2인</td><td>7,558,726</td><td>90,704,712</td></tr> <tr> <td>3인</td><td>9,646,265</td><td>115,755,180</td></tr> <tr> <td>4인</td><td>11,690,528</td><td>140,286,336</td></tr> <tr> <td>5인</td><td>13,602,094</td><td>163,225,128</td></tr> <tr> <td>6인</td><td>15,400,714</td><td>184,808,568</td></tr> </table>	가구원수 (부부+출생자녀)	기준중위소득180% 월소득 (원)	연소득 (원)	2인	7,558,726	90,704,712	3인	9,646,265	115,755,180	4인	11,690,528	140,286,336	5인	13,602,094	163,225,128	6인	15,400,714	184,808,568
가구원수 (부부+출생자녀)	기준중위소득180% 월소득 (원)	연소득 (원)																		
2인	7,558,726	90,704,712																		
3인	9,646,265	115,755,180																		
4인	11,690,528	140,286,336																		
5인	13,602,094	163,225,128																		
6인	15,400,714	184,808,568																		
다. 주택 기준	① (면적)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② (가격)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용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 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 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라. 대출 용도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도,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ex)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택구입 목적 대출이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 아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경상남도 진주시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상자 선정 이전 타 지자체로 전출한 자, 중도금대출 등은 지원 대상 아님
- 그 밖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안내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26. 7. 1.(수) ~ 7. 15.(수) 연1회 신청 ※ 선착순 선정 아님

○ 신청방법 ※ 우편, fax 신청 접수 불가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토·일·공휴일 평일점심시간 12:00~13:00제외)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

○ 신청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직인·날인 필)

※ 요건 검토 기준일 : 사업 공고일 (소득요건은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년도 수혜자는 거주지 변동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④ ~ ⑨ 생략 가능

구 분 [확인내용]	제 출 서 류	발 행 처
① [신청서]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붙임 서식1, 2
② [세대원 확인, 등본 상 거주사실 확인]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1부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부부 모두 경남 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확인서 등 사실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③ [신혼부부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임신한 경우, 임신확인서 추가 제출(배정 시 자녀수에 태아 포함)	(방문 발급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③ [출산가구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태아는 출산자녀가 아니며, 출산가구가 다음 자녀를 임신한 경우, 배정 및 지원금 선정 시 자녀수에 태아 포함(임신확인서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시 출생증명서 발급(병원)	
④ [연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세무서

구 분 [확인내용]	제 출 서 류	발 행 처
⑤ [1주택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본인, 배우자, 자녀 등 모두 제출)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 ※ '신청인+배우자+자녀+(그 외)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모두 합산하여 1주택 소유 ▶재산세(주택분) 납부자(총 2부 제출)-[참고2-4] - 진주시 주택 과세 증명서 1부 - 진주시를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자(1부 제출)-[참고2-4] -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미성년 자녀의 서류 발급은 부모 방문하여 발급만 가능)	▶진주시 내 주택 과세 증명서 (위택스 또는 방문발급) ▶진주시를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방문발급) ▶전국기준미과세 증명서 (위택스 또는 방문발급) *방문발급: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무과
⑥ [등기접수일 소유권 확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⑦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용부 모두 제출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표제부 생략 가능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⑧ [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매매계약서(사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분양권 매매(공급)계약서는 총매매금액(분양가+옵션비용+프리미엄) 표기된 전체 페이지 제출	신청인
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총 6부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나 형제자매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을 위한 서류 ※ 개인 간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법인과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
⑩ [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⑪ [이자율, 이자액 확인]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등)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금융기관
⑫ [입금계좌]	▶지원금 지급용 신청인(=대출실행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4 선정기준 등

- 선정방법 **※ 선착순 선정 아님**
 - 지원대상자 선정은 접수기간 내 신청한 가구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선정
 -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그룹별 선정
 - ※ 그룹별 지원 총액 = (해당 그룹 신청자 수 / 전체 신청자 수) × 전체 사업비
 - ※ 각 그룹 내에서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 선정결과 알림 : 2026. 10. 30.까지(선정자 개별 알림톡 통보 및 설문조사 실시)
- 이자지원금 지급: 2026. 11. 중(선정자 명의 계좌 이체)
 - ※ **업무량(신청량)에 따라 업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우선순위 배점표
 - ▶ 계산식 : 자녀수 점수 + 가구 연소득 점수 + 주택가격 점수
 - ▶ 동점자 우선순위 : 자녀수 많은 가구 > 연소득이 낮은 가구 > 주택가격이 낮은 가구

평가항목	자녀수(30점)	가구 연소득(40점)	주택가격(30점)
신혼부부 (100점)	2자녀 이상 : 30	3천만원 미만 : 40	2.5억원 미만 : 30
	1자녀 : 20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35	2.5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25
	무자녀 : 10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30	3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20
	*자녀기준 : 미성년자녀 (2007.1.1. 이후 출생, 경남도 내 거주) *자녀 수에 따라 포함 (공고일 기준)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25	3.5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15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20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0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 15	5억원 이상 ~ 6억원 이하 : 5
		8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 10	
		9천만원 이상 ~ 1억 이하 : 5	
출산가구 (100점)	3자녀 이상 : 30	중위소득 90% 미만 : 40	2.5억원 미만 : 30
	2자녀 : 20	중위소득 90% 이상 ~ 100% 미만 : 35	2.5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25
	1자녀 : 10	중위소득 100% 이상 ~ 110% 미만 : 30	3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20
	*자녀기준 : 미성년자녀 (2007.1.1. 이후 출생, 경남도 내 거주) *자녀 수에 따라 포함 (공고일 기준) (다음 자녀 임신)	중위소득 110% 이상 ~ 120% 미만 : 25	3.5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15
		중위소득 120% 이상 ~ 130% 미만 : 20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0
		중위소득 130% 이상 ~ 140% 미만 : 15	5억원 이상 ~ 6억원 이하 : 5
		중위소득 140% 이상 ~ 160% 미만 : 10	
		중위소득 160% 이상 ~ 180% 이하 : 5	

5 기타안내 사항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자에게는 수혜자 특성 파악, 사업효과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선정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 055-749-89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참고1) 민원인 셀프 체크리스트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2. (참고2) 신청 서식(신청서, 서약서) 및 신청서류 참고사항
3. (참고3)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1 민원인 셀프 체크리스트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 신청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직인·날인 필)**

※ 요건 검토 기준일 : **사업 공고일 (소득요건은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 구비서류 준비 확인사항 (상세증명서(일반 X),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작성(신청인 세대원(배우자·자녀) 서명 필수)	☐
① 과년도 수혜자 여부(제 차 신청) / 거주지 변동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⑥~⑩ 생략 가능	☐
②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1부) ※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	☐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7년 이내) : 2019.1.1.~ 에 해당 ☐ ※ 임신한 경우, 임신확인서 추가 제출 ☐	☐
③ (출산가구)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일(2년 이내) : 2024.1.1.~ 에 해당 ☐ ※ 임신한 경우, 임신확인서 추가 제출 ☐	☐
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 확인) (신혼부부) 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 (출산가구) 가구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2025년 귀속분, 미혼모(부)일 경우 본인만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주택만 소유 ☐ 2025~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확인 ▶(주택 소유자)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전주시 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연도 2025~2026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전주시 제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사실 없음 증명) ▶(그 외 세대원)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포함) 등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 재산세(주택분) 미과세 증명서 1부(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사실 없음 증명) ※ 본인 외 세대원의 서류를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등 필요 - 민원 청구 방문 신청 필요, 위임장(발급대상자의 신분증, 관계증빙 서류 등 필요) - 미성년 자녀의 서류 발급은 부모가 가능	제출대상 ☐ 본인 ☐ 배우자 ☐ 자녀 ☐ 그 외 세대원(해당시)
⑥ 거주 주택 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발급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구입(등기접수일자 기준) ☐	☐
⑦ 건축물대장 주거용 건축물 ☐ /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 공동주택(아파트) 경우 표제부 제출 생략 가능	☐
⑧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주택 매매가격 6억원 이하 ☐ / 주택 매도인과 친인척이 아님 확인 ☐	☐
⑨ 가족관계증명서 (주택매입계약서 상 개인 간 거래인 경우 제출 / 법인과 계약시 제출 생략 가능) (상세증명서(일반 X),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확인: 해당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지원제외) - 신청인 1부, 신청인의 부 기준 1부, 모 기준 1부 (총 3부) ☐ - 배우자 1부, 배우자의 부 기준 1부, 모 기준 1부 (총 3부) ☐	☐
⑩ 금융거래확인서(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대출용도: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용도 ☐ - 주택금융공사 대출도 제출해야 함(PC 화면캡처 불가),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
⑪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 대출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⑫ 지원금 지급금 신청인(=대출실행인) 계좌 (사본) (배우자 계좌 불가)	☐

참고2 신청 서식 및 신청서류 참고사항

1 신혼부부 사업 신청서 [서식1-1] [구비서류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 ☒	☐ 신혼부부(신규신청)			
※ 지원이력	☐ 신혼부부(과년도 수혜자) ※ 제 차 신청(수혜년도 모두기입:)			
신청인 (대출실행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혼인신고일 (혼인관계증명서상)	년 월 일	연락처(HP)	(신청인) (배우자)
소득기준	부부연소득 (2025년도)	(신청인) (배우자)	원 원	미성년 자녀 수 ☐ (‘07.1.1.이후 출생, 경남도내 거주, 태아포함)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 3자녀 이상
가족사항 (주민등록등본 의 세대원과 일치해야함)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0000-00-00)	주택소유여부 (소유/공동소유/미소유)
구입주택 현황	주택소유자		매도자	
	구입일 (등기상 접수일)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 소			
	매입가격	원	주택전용면적	㎡
대출현황	대출금액	원	대출잔액 (공고일 기준)	원
	대출이자율		대출기간	
	대출금융기관		대출용도	
지급계좌 (대출실행인)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1 출산가구 사업 신청서 [서식1-2] [구비서류①]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 ※지원이력	☐ 출산가구(신규신청) ☐ 출산가구(과년도 수혜자) ※ 제 차 신청(수혜년도 모두기입:)			
신 청 인 (대출실행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마지막 자녀출생일 (출생신고서상)	년 월 일	연락처(HP)	(신청인) (배우자)
소득기준	가구연소득 (2025년도)	(신청인) (배우자)	원 원	미성년 자녀 수☑ (‘07.1.1.이후 출생, 경남도내 거주, 태아포함) ☐ 1자녀 ☐ 2자녀 ☐ 3자녀 이상
가족사항 (주민등록등본 의 세대원과 일치해야함)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0000-00-00)	주택소유여부 (소유/공동소유/미소유)
구입주택 현황	주택소유자		매도자	
	구입일 (등기상 접수일)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 소			
	매입가격	원	주택전용면적	m ²
대출현황	대출금액	원	대출잔액 (공고일 기준)	원
	대출이자율		대출기간	
	대출금용기관		대출용도	
지급계좌 (대출실행인)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2 서약서 및 동의서 [서식2] [구비서류①]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신청자(본인)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이 제출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음을 신청인(본인)은 동의합니다.			
신청자격 등 서약 사항			신청인 자필서명
신혼부부(택1)	(혼인기간)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임 서약함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 1. 1.이후 혼인가구)		
출산가구(택1)	(자녀출생일) 출생신고일이 2년 이내임 서약함(임양 포함)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2024. 1. 1.이후 출산가구)		
전국기준 1주택 가구	신청자(본인)는 공고일까지 세대구성원 합산하여 전국기준 1주택 가구를 서약함.		
연소득	(신혼부부) 신청자(본인)와 배우자 합산하여 연소득 1억 원 이하임을 서약함 (출산가구) 신청자(본인)와 배우자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임을 서약함		
제외 대상	신청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서약함		
대출	신청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의 용도로 대출하였음을 서약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목적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에 이용		
수집·이용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세, 직계존·비속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대출잔액, 대출 이자 납부내역, 대출용도, 계좌번호 등		
보유 기간	신청인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 지급까지 이용되며, 지원금 지급 후 5년간 보유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목적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집		
수집·이용항목	주민등록번호		
보유 기간	신청인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 지급까지 이용되며, 지원금 지급 후 5년간 보유		
▶ 위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경상남도 내 사·군·읍면·동, 금융기관 등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 대출이용현황 확인에 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세, 대출이용현황 등	이용목적 확인 시점까지
▶ 위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의 신청자격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서약(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동의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약자(동의자) 배우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약자(동의자) 세대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약자(동의자) 세대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3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 방법 안내 (구비서류④ 관련)

- 2025년 소득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상 **빨간색 네모칸(10개)** 금액의 합계
- 부부 모두 제출
 -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2025년 기준)
 - (온라인 발급경로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신고사실없음)

□ 소득금액 증명원 확인 사항

발급번호	소 득 금 액 증 명 (년 귀속)						처 리 기 간	
							즉 시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단위 : 원)								
구 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총 결정세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수입금액								
소득금액								
*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산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한 분리과세 소득(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 * 총 결정세액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합계액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단위 : 원)								
구 분	소득 발생처		지급받은 총 액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	비고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임용근로)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관련 안내 (구비서류⑤ 관련)

-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총 2부 제출)

가. 진주시 주택 과세 증명서

- 해당 주택의 재산세(주택분) 납부 내역 확인(과세년도 2025 ~ 2026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 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 액 Tax Amount	비 고 Remarks	
재산세(주택)	2023-07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	2023-07	정기분				
지방교육세	2023-07	정기분				
소 계						
재산세(주택)	2024-07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	2024-07	정기분				
지방교육세	2024-07	정기분				
총 제납액 :				0 원 (총 0 건)		
총 정리보류액 :				0 원 (총 0 건)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나. (진주시 제외)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과세년도 2025 ~ 2026년)

- 재산세(주택분)를 납부한 진주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 대한 과세 사실 없음
- 경상남도를 제외한 시·도에 대한 '과세 사실 없음'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서류제출용
과세대상 Tax Objects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창원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합천군				
[과세년도 :]				
재산세(주택)				
관내 제납액 :			0 원 (총 0 건)	
관내 정리보류액 :			0 원 (총 0 건)	
위와 같이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자

○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과세 사실 없음'을 확인(과세년도: 2025~2026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서류제출용
과세대상 Tax Objects			
전국 자치단체 [과세년도 : .] 재산세(주택)			
관내 체납액 :		0 원 (총	0 건)
관내 정리보류액 :		0 원 (총	0 건)
위와 같이 <u>과세 사실이 없음</u> 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 온라인 발급 : 위택스→증명서발급→지방세 미과세증명서→“과세년도 2025~2026년, 관할지자체 진주, **전국선택 체크**, 재산세-주택 선택” 신청하여 발급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참고3

자주 묻는 질문(FAQ)

[지원금액]

□ 지원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 2025. 7. 1. ~ 2026. 6. 30.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에 대해 지원합니다.
- ※ 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이자율 등을 이자계산식에 대입하여 지원금을 산정하므로, 실제 이자 납부액과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계산식: 대출잔액 지원한도×이자한도×납부기간=이자지원액

- 대출잔액 한도 : 대출잔액이 지원한도 이상이라도 지원한도까지 지원
- 이자 한도 : 이자율이 3% 이상이라도 3%까지 지원
- 납부기간 : 2025. 7. 1. ~ 2026. 6. 30.기간 중 이자를 실제 납부한 기간(최대1년)
- ※ 산식 조건값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
- ※ 변동금리일 경우, 연평균 이율을 산출

<신혼부부>

- 대출잔액 한도 : 최대 5천만원

예시1) 대출잔액 1억5천만원, 금리 4% 경우

⇒ 5,000만원(한도) × 3%(한도) × 이자납부 기간 = 이자지원금

예시2) 대출잔액 4천만원, 금리 2% 경우

⇒ 4,000만원 × 2% × 이자납부 기간 = 이자지원금

<출산가구>

- 대출잔액 한도 : 최대 (5+자녀수*)천만원

* (지원금 선정 시) 자녀수 기준: 마성년자녀(07.1.1.이후 출생, 경남도 내 거주, 태아포함(공고일기준))

예시1) 자녀1명(2년 이내 영유아), 대출잔액 1억5천만원, 금리 4% 경우

⇒ 6,000만원(한도) × 3%(한도) × 이자납부 기간 = 이자지원금

예시2) 자녀3명(셋째 2년 이내 영유아), 대출잔액 8천만원, 금리 2% 경우

⇒ 8,000만원 × 2% × 이자납부 기간 = 이자지원금

[선정기준]

□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구분해서 선정하나요?

-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 각 그룹별 선정합니다.

예시) 예산 n천만원, 신청비율 신혼부부 40%, 출산가구 60%일 경우
신혼부부 그룹 n*0.4천만원 지원, 출산가구 그룹 n*0.6천만원 지원
※ 각 그룹 내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최대지원기간]

- ☐ 한번 선정되면 최대기간 동안 지원받는건가요?
- 최대지원기간이란 ‘매년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하며, 과년도 수혜자도 매년 재신청하여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은 후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고, 최초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로 기수혜받은 가구는 ‘2년 이내 영유아 출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최대 5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 최대 5년 간 지원
예시1) 과년도 수혜자(2022~2025) 신청시, 신청구분을 ‘기수혜자(n차 신청)’로 신청하고 지원받은 연도를 기재(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과년도 수혜자는 거주지 변동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⑥~⑨생략
※ 2022년 경상남도 사업 수혜자 포함
예시2) 2022년(수혜O), 2023년(수혜X), 2024년(수혜O), 2025년(수혜O)의 경우
최초 지원받은 2022년부터 최대 5년간 지원(2026년 사업까지)

<출산가구>
- 최대 5년 간 지원, 지원기간 중 추가로 출산시 최대지원기간 5년씩 연장
예시1) 첫째(2년 이내 영유아) 출산가구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기간 중 둘째 출산 : 최대 10년간 지원(5+5)
→ 지원기간 중 셋째 출산 : 최대 15년간 지원(5+5+5)
예시2) 자녀 2명 중 둘째(2년 이내 영유아) 출산가구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기간 중 셋째 출산 : 최대 10년간 지원(5+5)
예시3) 신혼부부로 2025년(수혜O), 출산가구로 2026년(수혜O)의 경우
→ 출산가구로 지원받은 2026년부터 최대 5년간 지원(2030년 사업까지)

자녀수	최초지원 출산자녀	지원한도	최대지원기간
1명	첫째	대출잔액 (5+1)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 (연최대 180만원)	최초 지원 연도부터 5년간
2명	첫째	대출잔액 (5+2)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 (연최대 210만원)	최초 지원 연도부터 10년간
	* 첫째로 최초지원을 받은 출산가구가 지원기간 중 둘째 출산한 경우		
2명	둘째	대출잔액 (5+2)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 (연최대 210만원)	최초 지원 연도부터 5년간
3명	첫째	대출잔액 (5+3)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 (연최대 240만원)	최초 지원 연도부터 15년간
	* 첫째로 최초지원을 받은 출산가구가 지원기간 중 둘째, 셋째를 출산한 경우		
3명	둘째	대출잔액 (5+3)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 (연최대 240만원)	최초 지원 연도부터 10년간
	* 둘째로 최초지원을 받은 출산가구가 지원기간 중 셋째를 출산한 경우		
3명	셋째	대출잔액 (5+3)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 (연최대 240만원)	최초 지원 연도부터 5년간

[지원기준]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적인 제출서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 연소득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종합소득을 검토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확인합니다.
 - 출산가구 중 미혼모(부)일 경우 본인의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확인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는 연소득 기준을 초과하나, 공고일 기준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지원 가능한가요?
-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종합소득을 검토하기 위해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 이로 인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가구의 소득의 변동 사항은 반영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신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출산가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얼마인가요?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의 가구원 수별 소득금액표입니다.
-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월소득 (원) | 연소득 (원) |
|------|---------------------|-------------|
| 2인 | 7,558,726 | 90,704,712 |
| 3인 | 9,646,265 | 115,755,180 |
| 4인 | 11,690,528 | 140,286,336 |
| 5인 | 13,602,094 | 163,225,128 |
| 6인 | 15,400,714 | 184,808,568 |
- 가구원수는 신청자(본인), 배우자, 자녀수 합산입니다.
- ☐ [출산가구] 첫째가 20개월, 둘째가 10개월일 경우 2026년에 첫째로 출산가구 신청하고, 2027년에 둘째로 신청 가능한가요 ?
- 2년 이내 영유아가 여러명인 출산가구는 마지막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2026년에 둘째를 기준으로 출산가구로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으로는 임신 중으로 신혼부부로 신청을 하였는데, 이자 지급 이전에 출산한 경우, 출산가구로 변경이 가능한지?**

-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각종 요건의 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소득요건은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공고일까지 출산한 경우 ‘출산가구’에 해당되며, 이후 출산한 가구는 내년도 사업부터 출산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배점 및 지원금 산정 시 자녀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우선순위 배점 및 지원금 산정 시 자녀수는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 및 경남도 내 거주)와 공고일 기준 태아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이전에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본 사업의 취지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인구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 공고일까지는 거주하고 이후에 전출한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고일까지는 거주하고 동일한 지자체 내에 이사한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 또한 2025. 7. 1. ~ 2026. 6. 30.기간 중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 이사한 경우는 각각의 주택 및 대출 요건 등이 적합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가 지원대상이며, 건축 중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중도금 대출은 지원대상 아님)
- 다만 주택(아파트)이 준공 완료되어 실제 거주(전입)하고 있는데 민법 상 등기(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주택가격은 총매매금액(분양가+옵션비용+프리미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분양권을 매매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양도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분양권 매매는 건설 중인 건물(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을 자격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실제 부동산(건물)의 매매와는 구분됩니다.

☐ **복수 대출 또는 대출 변경(대출 갈아타기)한 경우에도, 대출 이자 납부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기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각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연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가 공동명의로 된 경우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 소유자 중 한분이 신청하시되, 주택계약자 및 대출실행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주택계약자 및 대출실행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무주택자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인, 배우자, 자녀, 그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세대원이 해당 거주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인+배우자+자녀+(그 외)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모두 합산하여 1주택 소유
※ (그 외)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 부모, 형제 등

☐ **공고일 이전에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대출잔액을 바탕으로 지급되므로,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공고일 이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잔액이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납입증명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발급 방법) 두 서류 모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대출납입증명서류 종류) 금융기관마다 서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예시 중 해당되는 서류를 발급 요청하세요.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 여신거래내역서
 - (기간별) 대출금(이자) 계산서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 (유의사항)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날인(도장)'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나요?

-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 직장 때문에 주소가 다른 경우 재직증명서, 육아로 인해 주소가 다른 경우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어떻게 발급 받아야 되나요?

- (발급 목적) 직계 가족과의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나 '형제자매'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 개인 간 주택매매계약을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제출 제외' 가능합니다.
- ※ 과년도 수혜자는 거주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총 6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신청자의 아버지, 신청자의 어머니 각 1부씩 제출
배우자,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각 1부씩 제출

-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형제자매가 표시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정부24),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 서류 제출 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 선명하게 촬영된 사진에 한해 신청서류로 인정됩니다. 가독성 확보를 위해 스캔본 제출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사진 촬영본을 제출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이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